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동계좌이체 약관 개정 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7. 6. 26.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생략)	(좌동)	
제 1 조(목적) ~ 제 2 조(용어의 정의) (생략)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좌동)	
제3조 (자동이체 신청) 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오픈플랫폼중계센터를 통해 사용자 로부터 서면(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3조 (자동이체 신청) 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오픈플랫폼중계센터를 통해 사용자 로부터 서면(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금 동의 방법)에 의하여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ARS 등 사전동의 방법 추가
제4조(자동이체) ~ 제15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생략)	제4조(자동이체) ~ 제15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좌동)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이전에 영업점, 인터넷뱅킹 이용매체에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